



제391회국회(정기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기간 확대〉

■ 박광온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2145호)

2021.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정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광온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1. 8. 20.

다. 회 부 일 : 2021. 8.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중소기업에 대하여 2020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직전연도의 사업소득에서 일정 부분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곤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해당 결손금 환급 특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에 대한 2020년 및 2021년 발생한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의 환급 범위를 직전 3개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4).

Ⅲ. 검토의견

1.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특례 허용기간 확대 신설(박광온의원안, 정부안)

현 행	박광온의원안	정부안
<신 설>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신설(안 제8조의4)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 또는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이하 “환급대상기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 가능 ○ 환급대상기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신청 ○ 시행일: 공포한 날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을 받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다만, 해당 내국인이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 중 하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 특례 신설(안 제8조의4)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이 「소득세법」 제85조의2 및 「법인세법」 제72조를 적용하는 경우로서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2개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신청 가능 ○ 시행일: 2022. 1. 1. ○ 적용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에 한하여 적용

* 박광온의원안 2021. 8. 20. 발의 (의안번호 12145), 정부안 2021. 9. 2. 제출(의안번호 12406)

□ 개정안은 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 박광온의원안은 2021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하여도 소급공제를 허용하며, 그 한도를 직전 3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 정부안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환급특례 허용한도를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에서 직전 2개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발표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 법인세는 법인의 존속기간 전체에 걸친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현행법은 기간과세의 원칙¹⁾을 채택하고 있어 결손이 발생한 법인이 조세를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될 수 있음. 결손금에 대해서는 15년간 이월하여 공제하는 이월공제 방식과 과거로 소급하여 과거의 소득에서 공제하는 소급공제 방식이 있음.

○ 소급공제 방식의 경우 이미 납부한 법인세수에 영향을 줄 수

1) 사업자의 존속기간의 전체 소득을 각 사업연도로 구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임.

있어 「소득세법」 제85조의2²⁾ 및 「법인세법」 제72조³⁾에 따라 중소기업에 한하여 직전 1개 과세연도의 소득세·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있음⁴⁾.

중소기업 결손금 환급실적을 보면, 2016년 이후 환급세액과 환급받은 개인·법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로서 2020년 법인의 경우 6,036개가 2,446억원을, 개인의 경우 1,356명이 128억원을 환급받았음.

[중소기업(법인) 결손금 환급실적]

(단위: 억원, 개)

과세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환급세액	842	897	1,375	1,740	2,446
법인 수	3,264	3,209	4,085	5,026	6,036

자료: 국세청

2) 「소득세법」

제85조의2(중소기업의 결손금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4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그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 소급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해서 제45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3) 「법인세법」

제72조(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2.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직전 사업연도의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4) 소급공제 여부와 소급공제 받을 결손금 범위는 납세자의 선택사항으로 「소득세법」 제85조의2제항 및 「법인세법」 제72조제2항에 따라 별도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하지 않아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결손금은 이월공제가 가능함.

[중소기업(개인) 결손금 환급실적]

(단위: 억원, 명)

과세연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환급세액	71	79	101	127	128
개인 수	637	691	824	974	1,356

자료: 국세청

한편, 2020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같은 법 제8조의4 제1항5)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환급제도를 일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긍정적인임.

첫째, 개정안과 같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한도를 직전 2개년 또는 직전 3개년에 발생한 세액으로 확대할 경우 코로나19 등의 상황으로 경영이 악화되어 결손금이 큰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확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5)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4(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 ① 과세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인은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제1호의 금액을 한도로 제2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환급 신청할 수 있다.

1.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
2.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times 6 \div$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직전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times 6 \div$ 직전 과세연도의 개월 수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 (소급공제를 받으려는 환급대상기간의 결손금 상당액 $\times$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div 6$)

예를 들어, 중소기업이 2021년 귀속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을 경우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르면 2020년 귀속 사업연도에 납부세액이 있어야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하였으나, 정부안과 같이 환급한도를 직전 2개년에 발생한 세액으로 확대할 경우 2020년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2019년도 귀속 사업연도 납부세액이 있다면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이 가능함.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납부세액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많아 현실적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활용이 어려운 기업이 상당한 실정이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됨.

둘째, 결손금 공제제도는 특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성격보다는 현행법에 따른 기간과세 원칙의 문제점을 조정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로써, 15년간 허용되는 이월공제와 달리 소급공제기간만 직전 사업연도로 엄격하게 제한할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음.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이월공제 제도에 따라 미래에 공제받을 금액을 미리 환급받는 것일 뿐이므로, 중소기업에게 일정한 기간이익을 주는 것에 불과하여 과도한 혜택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음.

셋째, 해외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결손금 소급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미국의 경우 2018~2020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5년간 소급

공제를 허용하고, 노르웨이의 경우 2020년 결손금을 2018년 세액에서 소급공제하도록 허용한 바 있음⁶⁾.

[주요국의 결손금 소급공제 현황]

구분	적용 없음	1년 소급공제	2년 소급공제	3년 소급공제	5년 소급공제
국가	호주,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네덜란드, 한국, 영국	노르웨이 (2020년 결손금)	캐나다	미국 (2018~2020년 결손금)

자료: 기획재정부, OECD tax 홈페이지 등 참고

넷째, 과거에도 경기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2001. 8. 24. ~ 2002. 12. 31.까지 과세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의 소급공제기간을 직전 2년 과세연도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를 감안할 필요가 있음⁷⁾.

□ 다만,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공제 방식과 달리 과거에 이미 확정·징수된 세액을 환급하는 제도이므로,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할 경우 이미 확정된 국가세입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어 소급공제기간을 가급적 짧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둘째, 소급공제기간을 확대할 경우 세수변동 폭이 확대되어 안정적 재정운영이 저해되는 측면이 있음.

6) Tax policies responses to Covid-19(OECD Tax 홈페이지) 등

7) 해당 규정은 2001년과 2002년에 한시적으로 시행되었음.

경기가 침체되면 법인소득이 감소하여 법인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소급공제기간 확대 시 소급공제 환급세액 증가로 인해 세수감소 규모가 더 크게 됨. 이에 따라 경기변동에 따른 세수변동 폭이 확대되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셋째, 박광온의원안의 2020년 발생 결손금에 대하여도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직전 3개 과세연도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2020년 발생 결손금에 대한 소급공제는 이미 완료되어 추가 허용에 따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으며, 과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국세행정을 복잡하게 하는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박광온의원안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4에 따라 환급을 받은 내국인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해당 내국인이 제8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또는 개정규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종전의 규정은 2020년 상반기에 발생한 결손금을 조기환급하고 추후 법인세 신고 시 정산하는 특례로서 한 내국인이 개정 전 규정과 개정 후 규정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부칙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① 2020년 상반기에 결손금이 발생하여 종전 규정으로 조기환급을 신청하고, ② 2020년 하반기 실적 개선으로 연간 흑자 전환하여 법인세 신고 시 오히려 환급세액을 납부한 법인

이 ③ 2021년 결손으로 인해 결손금 소급공제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장기 내수부진 등 경영상 악화가 심화되는 기업의 경우 당기에 결손이 났다면 직전 연도분의 법인세 납부액도 크지는 않을 것이므로 정부안과 같이 직전 2년간 법인세 납부액으로 환급범위를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환급범위를 정부안과 같이 2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박광온의원안과 같이 3년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4